남원시
NAMWON CITY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람	기관의 장

제23호 2016. 5. 27(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76 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712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2

회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고시 제2016 - 76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24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가.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44-2번지
   나. 사 업 량 : 3,184㎡
   다. 사업기간 : 2016. 05. ~ 2017. 05. 31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인월면 상우길 * *, 변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620-6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6-712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2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보다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 40명 → 50명
- 위원장 후보의 등록, 선거 및 선출, 부위원장 선출 조항 신설

나. 위원장의 선거 (안 제4조의1) 신설

다. 분과위원회 설치 등 (안 제11조)

-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 : 10명 이내 → 13명 이내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위원회 위원장 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 40명 → 50명
- 위원장 후보의 등록, 선거 및 선출, 부위원장 선출 조항 신설

나. 위원장의 선거 (안 제4조의1) 신설

다. 분과위원회 설치 등 (안 제11조)
-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 : 10명 이내 → 13명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6. . ~ 2016. 6.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진행중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위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기획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위원장의 선거) 위원장의 선거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등록한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10명”을 “13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50명 ----------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위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기획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신 설>	제4조의1(위원장의 선거) 위원장의 선거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등록한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시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한다. 다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3명 ----------. ----------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